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801
----------	-------

발의연월일 : 2025. 12. 3.

발 의 자 : 안태준 · 김영진 · 소병훈
이정문 · 백혜련 · 한병도
정준호 · 김준혁 · 허성무
김동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시공원 내 범죄 및 안전사고 발생 예방을 위하여 공원관리청이 도시공원 내 주요 지점에 폐쇄회로 텔레비전과 비상벨 등을 설치·관리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공원시설 내에서의 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나, 일부 도시공원은 여전히 비상벨이나 비상대응 장치 등의 설치가 미흡하여 야간 이용객들의 불안감이 크며, 현행 누름식 비상벨만으로는 위급 시 사용자 접근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AI를 활용한 음성인식 비상대응 장치 등을 설치하도록 하여 공원시설 내 범죄에 대한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공원관리청이 도시공원 내에 음성인식 비상대응 장치를 설치·관리하도록 규정하여 도시공원 이용객의 안전 확보 및 편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 중 “텔레비전과 비상벨 등을”을 “텔레비전, 비상벨 및 음성인식 비상대응 장치(비상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이용자가 직접 조작하지 않더라도 이용자의 음성을 인식하면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자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계장치를 말한다) 등을”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음성인식 비상대응 장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도시공원에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음성인식 비상대응 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도시관리청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 법에 따라 음성인식 비상대응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의2(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의 설치·관리)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이하 “공원관리청”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범죄 또는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도시공원 내 주요 지점에 폐쇄회로 <u>텔레비전과 비상벨</u> 등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의2(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의 설치·관리) ----- ----- ----- ----- ----- ----- ----- ----- ---텔레비전, 비상벨 및 음성인식 비상대응 장치(비상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이용자가 직접 조작하지 않더라도 이용자의 음성을 인식하면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자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계장치를 말한다) 등을----- ----- ---